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의 취지 및 제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29조제4항을 삭제함(안 제29조제4항 삭제).
- 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평가에 그 준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 다.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 라. 시행일을 공포 후 3년 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으로 함(안 부칙).
- 마. 그 밖에 체계·자구를 수정함.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1항을 현행 제6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간호사 배치기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이라 한다)을”로,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인력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간호사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호사 배치기준은”을 “제2항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정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의료기관의 장은”을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으로, “현황 등에”를 “현황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안 부칙 중 “1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3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

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여야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

한다.

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2.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
서별 특성

4. 그 밖에 보건복
지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간호사 배치기
준은 제38조에 따
른 간호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은 「의료법」 제3

----고려하여 정하
여야 한다. -----

-----간
호사만을 포함한
다.

1. ~ 4.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을 정할 때에
는-----

<삭 제>

6조 제5호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함에 있
어 제3항에 따라
간호정책심의위원
회에서 간호사 배
치기준이 심의·의
결된 경우에는 이
를 즉시 반영하여
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
은 해당 의료기관
의 간호사 배치 현
황 등에 관한 정보
를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개하여야 한
다.

⑥ 국가는 의료기
관에 근무하는 간
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
여 필요한 정책
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현황에-----

-----.

<삭 제>

	<u><신 설></u> <u><신 설></u> <u>부 칙</u> <u>이 법은 공포 후 1</u> <u>년이 경과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u>⑤ 보건복지부장관</u> <u>은 간호사 적정 배</u> <u>치기준 준수 현황</u> <u>을 관계 법령에 따</u> <u>라 실시하는 보건</u> <u>의료기관에 대한</u> <u>평가에 반영하도록</u> <u>노력하여야 한다.</u> <u>⑥ 그 밖에 간호사</u> <u>적정 배치기준의</u> <u>설정에 필요한 사</u> <u>항은 보건복지부령</u> <u>으로 정한다.</u> <u>부 칙</u> -----<u>3</u> <u>년 내에 시행하되,</u> <u>그 기간 내에 보건</u> <u>복지부령으로 정하</u> <u>는 시점부터</u>----- ----.
--	---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58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남인순
김 윤 · 백혜련 · 전종덕
서미화 · 송옥주 · 허성무
전진숙 · 김현정 · 임미애
김원이 · 이건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의 배치는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시간을 증가시켜 투약오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욕창, 병원감염, 환자안전사고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환자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이는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와 직무 지속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함. 결국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환자 치료 및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은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과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에 필수적인 과제임.

위와 같은 이유로 국외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간호사 근무 형태, 간호단위 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간호사 배치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음.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의 취지 및 제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29조제4항을 삭제함(안 제29조제4항 삭제).

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평가에 그 준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다.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라. 시행일을 공포 후 3년 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으로

함(안 부칙).

마. 그 밖에 체계·자구를 수정함.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만을 포함한다.

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2.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u> <u>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u> <u>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u> <u>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u> <u>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u> <u>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u> <u>을 할 수 있다.</u>	<u>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국</u> <u>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u> <u>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u> <u>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u> <u>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u> <u>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u> <u>원을 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u> <u>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u> <u>“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이라</u> <u>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u> <u>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u> <u>하는 간호사만을 포함한다.</u> <u>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u> <u>2.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u> <u>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u> <u>부서별 특성</u> <u>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u>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제2항에 따라 간호사 적정</u> <u>배치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38</u>

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